신앙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

제정: 2000. 06. 26. 개정: 2015. 02. 06. 개정: 2015. 08. 07. 개정: 2022. 08. 05.

담당: 일립교육과(02-950-5446)

----- 목 차 -----
제1조(목적) 제2조(졸업) 제2조의2(범위) 제3조(신앙훈련의 내용)

제4조(이수방법) 제5조(장학 대상 제외) 제6조(출석인정) 제7조(특별교육)

제8조(학과담임목사) 제9조(기타)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1조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학생 신앙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본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5.08.07)

제2조(졸업) 삭제(개정2003.3.1).

제2조의2(범위) 신앙교육 및 훈련의 범위는 채플(경건훈련), 개강수련회(FT, 사경회), 밀알훈련, 전도훈련, 성서적 세계관 교육, 기타 일립교육과에서 공고하는 특별집회 및 방학 중 신앙생활을 포함한다(개정 2015.08.07)(개정 2022.08.05.)

제3조(신앙훈련의 내용) 삭제(개정2003.3.1).

제4조(이수방법) 모든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앙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.(개정 2015.08.07)

- 1. 채플(경건훈련) : 학기별 채플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. (개정2015.08.07)
 - 가. 5일 수업자: 수업일수의 75% 이상 참석해야 한다.
 - 나. 4일 수업자: 수업일수의 84% 이상 참석해야 한다.
 - 다. 3일 수업자: 수업일수의 100% 이상 참석해야 한다.
- 2. 개강수련회(F.T): F.T 출결은 해당 주간과목에 반영한다. (개정2015.08.07)
- 3. 밀알훈련: 입학년도에 밀알훈련에 참여해야 한다. 단 특별한 경우 일립교육과장의 허가를 받아 2년차에 참여할 수 있다. (개정2015.08.07)(개정 2022.08.05.)
- 4. 전도훈련: 전도훈련반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 (개정2015.08.07)

- 5. 방학 중 신앙생활 (개정2015.08.07)
 - 가. 방학중 이행해야 할 신앙생활은 다음과 같다.
 - ㄱ. 교회출석보고서
 - ㄴ. 묵상지
 - ㄷ. 독서보고서
 - 나. 가에 대한 보고서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 - 다. 가에 대한 보고서 미제출자는 경건훈련이 NP처리된다.
 - 라. 단 1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교목실장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경건훈련을 이수함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- 6. 성서적세계관교육: 학생들은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성서적세계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제5조(장학 대상 제외) 삭제(개정2003.3.1).

제6조(출석인정) 경건훈련의 출석 인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각호와 같다(개정2003.3.1).

- 1. 예배에 참석하여 출석 카드 제출 등으로 참석이 확인되었을 시,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, 10분 이상 지각 자나 중도 퇴실자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2. 다음의 경우에는 불참하였을지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. 단 예배 시작 전까지 예배 참석 인정 허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.
- 가.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(5일 범위) 증빙서류 7일 이내 제출
- 나.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(3주 이내 범위) 퇴원 후 7일 이내 진단서 제출
- 다. 병사 관계(징병검사, 예비군훈련)로 인한 결석(해당기간)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
- 라. 실습, 학술 답사 등 교육에 의한 결석(해당기간)
- 마.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, 행사참가(해당기간)
-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
- 바.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참석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(해당기간)
-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
- 사. 졸업예정자가 국가 또는 기업체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(해당기간)
- 허가 원 제출 시 통지서 첨부

제7조(특별교육) 경건훈련 미 이수 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특별훈련에 참석하여 2회에 한하여 이수 할 수 있다. (개정2003.3.1).

제8조(학과담임목사)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지도를 위해 학과 담임목사를 둘 수 있다. 학과담임목사 제도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 (제정 2015.08.07)

제9조(기타) 기타 신앙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립교육과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(개정 2015.08.07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